

제205회 영등포구의회
2017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
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박미영 의원 발의】



2017. 12. 5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25호로 2017년 11월 13일 박미영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추진으로 주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나.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(안 제4조 ~ 제5조)

다.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17. 11. 8. ~ 11. 13.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,
 -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, 사업자, 국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보 및 구민 행동요령 안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7조에는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및 저소득세대에 속한 환경취약계층에 대하여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-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발생원인¹⁾은 대부분 연료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국내 배출의 경우 대도시에는 경유차가,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많이 배출되며, 국외영향은 평시에는 연평균 30~50%, 고농도시에는 60~80%로 추정되고 있음.
-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주요 선진국 및 WHO 등 국제적 기준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특히 우리구는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호흡기 질환 유발 등 구민의 불편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.

[도시대기 측정소별 월평균 대기오염도 (2017년 8월)]

구분	미세먼지 [$\mu\text{g}/\text{m}^3$]	초미세먼지 [$\mu\text{g}/\text{m}^3$]	이산화질소 (ppm)	오존 (ppm)	아황산가스 (ppm)	일산화탄소 (ppm)
월평균	21	13	0.021	0.024	0.004	0.4
영등포구	26	13	0.025	0.029	0.004	0.5

※ 출처: 서울시 2017년 8월 서울 대기질 분석 결과 (영등포구 미세먼지 오염도 25개구 중 1위)

1) 출처: 환경부-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

-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